생활화학용품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 (이언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290

발의연월일: 2024. 9. 25.

발 의 자:이언주 · 민병덕 · 민형배

이재강・소병훈・이재관

이상식 · 정성호 · 정진욱

강준현 의원(10인)

제안이유

2015년 1월 1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화학물질의 등록, 화학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유해성·위해성에 관한 심사평가,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함유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통과된 바 있음.

그러나 2011년 가습기살균제의 살균 원료인 '폴리핵사 메틸렌 구아니딘(PHMG)' 또는 '염화 올리고-에톡시 에틸 구아니딘(PGH)' 때문에 산모와 영유아 등이 사망하거나 심각한 폐 손상을 입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 보듯이 생활화학용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제는 관련법령의 미비로 어려움이 있음.

이에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생활화학용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생활화학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유해화학물질이 포 함된 생활화학용품 사용으로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생활화학용품의 화학적 부작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효적인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생활화학용품의 화학적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생활화학용품"이란 소비자가 가정, 학교, 사무실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품 중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호의 제품 및 위해우려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품을 말함(안 제2조제1호).
- 다. 생활화학용품의 제조자등은 그 생활화학용품을 사용한 자가 사망하거나 생활화학용품질병에 걸린 경우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안 제6조).
- 라. 생활화학용품질병 발생이 생활화학용품의 사용으로 인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생활화학용품으로 인하여 생활화학용품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함(안 제7조).
- 마. 피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조자 등에게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청구권을 인정함(안 제8조).

- 바. 생활화학용품의 사용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구제급여의 종류를 명시함(안 제9조).
- 사. 판정위원회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을 두며, 판정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공개와 방청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안 제16조 및 안 제18조).
- 아.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생활화학용품질병피해 구제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32조제1항).
- 자. 생활화학용품피해인정 등에 관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심의하는 기구로 환경부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생활화학용품 질병피해구제 재심사위원회를 둠(안 제45조제1항).
- 차. 생활화학용품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유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과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함 (안 제53조제1항).

생활화학용품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생활화학용품의 화학적 부작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효적인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생활화학용품의 화학적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 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생활화학용품"이란 소비자가 가정, 학교, 사무실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품 중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제2조제15호의 제품 및 위해우려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품을 말한다.
- 2. "생활화학용품질병"이란 생활화학용품을 사용하는 중 발생하는 질병으로 역학조사(疫學調査) 등을 통하여 생활화학용품의 화학적 부작용과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제14조에 따른 생활화학용품 피해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한다.

- 3. "생활화학용품피해자"란 생활화학용품으로 인하여 직접 건강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 4. "제조자등"이란 생활화학용품의 개발·제조·판매·유통·수입을 한 자를 말한다.
- 5.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국민이 생활화학용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생활화학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시책과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 시책과 피해자 구제에 관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구역 내 피해자 실태파악 및 피해자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피해자단체) ① 생활화학용품피해자와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이하 "피해자단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 ② 피해자단체는 생활화학용품피해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활동을 할수 있다.
 - ③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단체에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41조에 따른 심사청구 및 제44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의 제기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

- 에 따른 청구로 본다.
- ② 제46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 조를 적용할 때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
- ③ 제41조에 따른 심사청구 및 제44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관하여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따른다.

제2장 생활화학용품피해 배상 및 구제

- 제6조(손해배상책임) 생활화학용품의 제조자등은 그 생활화학용품을 사용한 자가 사망하거나 생활화학용품질병에 걸린 경우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제조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인과관계의 추정) ① 생활화학용품질병 발생이 생활화학용품의 사용으로 인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생 활화학용품으로 인하여 생활화학용품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 다.
 - ② 제1항에 따른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생활화학용품의 생산과정, 사용된 설비, 사용된 물질의 종류와 농도, 피해의 양상 및 그 밖에 피해발생에 영향을 준 사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제8조(정보청구권) ① 이 법에 따른 피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그 범위

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화학용품피해자는 해당 제조 자등에게 제7조제2항과 관련한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피해배상 청구를 받은 제조자등은 생활화학용품피해자에 대한 피해배상이나 다른 제조자등에 대한 구상권의 범위를확정하기 위하여 다른 제조자등에게 제7조제2항과 관련한 정보의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청구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활화학용품피해자 및 제조자등은 영업 상 비밀 등을 이유로 정보 제공 또는 열람이 거부된 경우에는 환경 부장관에게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14조에 따른 생활화학용품피해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해당 제조자등에게 정보 제공을 하도록 하거나 열람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⑥ 제1항·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거나 열람한 자는 그 정보를 해당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정보 제공 또는 열람 청구의 절차 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9조(구제급여의 종류) 생활화학용품의 사용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요양급여
 - 2. 요양생활수당
 - 3. 장의비
 - 4. 특별유족조의금 및 특별장의비
 - 5. 구제급여조정금
- 제10조(구제급여의 지급 등) ① 구제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 장관에게 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생활화학용품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이 결정된 날부터 3 0일 이내에 제32조에 따른 생활화학용품질병 피해구제기금에서 구 제급여를 지급한다.
 - ④ 구제급여의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구제급여 지급 중지)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제급여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 1. 제48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제49조에 따른 진찰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 제12조(생활화학용품피해인정 신청 등) ① 제9조제1호·제2호에 따른 구제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내에서 생활화학용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활화학용품질병이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의 인정(이하 "생 활화학용품피해인정"이라 한다)을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4조의 생활화학용품피해 판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생활화학용품피해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의학적 사유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60일 이내에 생활화학용품피해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할 때에는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생활화학용품피해인정 여부의 결정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같은 항 본문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용품피해인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인정을 받은 자에게 생활화학용품피해의료수첩을 교부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 ⑤ 생활화학용품피해의료수첩을 교부받은 자는 해당 수첩을 타인에 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생활화학용품피해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화학용품피해인정을 위한 진찰·검사 등 관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⑦ 제2항에 따른 생활화학용품피해인정의 절차·방법, 제4항에 따른 생활화학용품피해의료수첩의 서식, 제6항에 따른 지원조건·금액·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생활화학용품피해인정의 유효기간 등) ① 생활화학용품피해인 정의 유효기간은 해당 생활화학용품질병의 종류 및 피해등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생활화학용품피해인정을 받은 자(이하 "피인정자"라 한다)가 자신의 생활화학용품질병이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나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유효기간의 갱신을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절차는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4조에 따른 생활화학용품피해 판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생활화학 용품피해인정을 갱신할 수 있다.
 - ④ 환경부장관은 피인정자의 생활화학용품질병이 나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제14조에 따른 생활화학용품피해 판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생활화학용품피해인정을 철회할 수 있다.
 - ⑤ 생활화학용품피해인정의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피인정자에게 지급되는 구제급여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용품피해인정을 갱신하거나 철회한 경우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피인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① 그 밖에 생활화학용품피해인정의 갱신 및 철회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생활화학용품피해 판정위원회) ① 생활화학용품피해인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생활화학용품피해 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생활화학용품질병 결정에 관한 사항
 - 2. 생활화학용품피해인정에 관한 사항
 - 3. 생활화학용품피해인정의 갱신 또는 철회에 관한 사항
 - 4. 특별유족인정에 관한 사항
 - 5. 제8조제4항 · 제5항에 따른 정보 제공 및 열람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생활화학용품피해인정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판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1. 환경의학자
 - 2. 환경전문가
 - 3. 위생학자
 - 4. 독극물학자
 - 5. 정신건강 전문가
 - 6. 피해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③ 판정위원회는 산하에 제1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전문적인 사

- 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분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④ 판정위원회 및 분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판정위 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 니한 사람
 -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심신상실자 · 심신박약자
- 제16조(판정위원회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판정위원회의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 ② 판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 ③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 제17조(판정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판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에서

제척(除斥)된다.

- 1. 판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 계에 있는 경우
- 2. 판정위원회의 위원이 그 사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판정위원회의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 4. 판정위원회의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5. 판정위원회의 위원이 그 사건의 대상이 된 결정 등에 관여한 경우
- ② 당사자는 판정위원회의 위원에게 심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忌避申請)을 할 수 있다.
- ③ 판정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를 회피(回避)할 수 있다.
- 제18조(회의의 공개 및 방청) ① 판정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의 보호 및 영업비밀의 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판정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 ③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의장에서 녹음·녹화·촬영· 중계방송 등을 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19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피인정자에게 지급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피인정자가 생활화학용품피해의료수첩을 제시하고 의료기관으로부터 생활화학용품질병의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에 드는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피인정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등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피인정자가 생활화학용품피해의료수첩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생활화학용품질병의 치료를 받은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 ④ 요양급여의 지급 신청은 그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할 수 없다.
 - ⑤ 요양급여의 지급결정은 제12조에 따른 생활화학용품피해인정을 신청한 날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는다.
- 제20조(요양생활수당) ① 요양생활수당은 피인정자에게 지급한다.
 - ② 요양생활수당은 요양급여 외에 생활화학용품질병의 종류와 피해 등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③ 요양생활수당은 월 단위로 지급하되, 그 지급은 생활화학용품피해인정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시작하여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에 끝난다.
- ④ 요양생활수당의 지급 신청은 그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3년 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할 수 없다.
- 제21조(장의비 및 간병비) ① 장의비는 피인정자가 생활화학용품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 ② 장의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③ 장의비의 지급신청은 피인정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할 수 없다.
 - ④ 간병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①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에게 지급한다.
 - 1. 생활화학용품피해자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생활화학용품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 2. 생활화학용품피해자로서 생활화학용품피해인정을 신청하지 아니 하고 이 법 시행 후에 생활화학용품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 3. 생활화학용품피해자로서 이 법에 따른 생활화학용품피해인정 신 청을 하였으나 인정을 받기 전에 생활화학용품질병으로 사망한 사 람

- ② 특별유족조위금의 금액은 해당 생활화학용품질병의 치료에 드는 비용, 제13조제5항에 따른 구제급여액 및 제20조에 따른 요양생활수 당의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특별장의비의 금액은 제21조에 따른 장의비의 금액으로 한다.
- ④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이하 "특별유족조위금등"이라 한다)의 지급 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특별유족조위금등의 지급 신청은 사망한 날부터 각각 5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할 수 없다.
- 제23조(특별유족조위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 및 순위)
 - ① 특별유족조위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제2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당시 그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 한한다.
 - ② 특별유족조위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에 관하여 제26조제2 항·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미지급요양급여등"은 "특별유족조 위금등"으로 본다.
- 제24조(특별유족인정) ① 특별유족조위금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생활화학용품질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의 인정(이하 "특별유족인정"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고, 그 절차는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생활화학용품피해인정"은 "특별유족인정"으로 본다.
 - ② 그 밖에 특별유족인정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

부렁으로 정한다.

- 제25조(구제급여조정금) ① 피인정자가 해당 생활화학용품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해당 생활화학용품질병으로 지급받은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의 합계액이 제22조제2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보다적은 때에는 피인정자의 사망 당시 피인정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있던 유족에게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에서 위의 합계액을 뺀 금액을 구제급여조정금으로 지급한다.
 - ② 구제급여조정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에 관하여 제26조제2항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미지급요양급여등"은 "구제급여조정 금"으로 본다.
 - ③ 구제급여조정금의 지급신청은 피인정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할 수 없다.
- 제26조(미지급 요양급여) ① 제19조에 따른 요양급여 및 제20조에 따른 요양생활수당(이하 "요양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요양급여등(이하 "미지급요양급여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으면 수급권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청구에 따라 미지급요양급여등을 지급한다.
 - ② 미지급요양급여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순위는 그 배우자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순으로 한다.

- ③ 미지급요양급여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 ④ 미지급요양급여등의 지급 청구는 수급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할 수 없다.
- 제27조(요양급여등의 지급 중지) ① 환경부장관은 피인정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요양급여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등의 지급 중지를 결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피인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요양급여등의 지급 중지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 령으로 정한다.
- 제28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급여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를 말한다)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여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를 받은 경우
 - 2. 그 밖에 잘못 지급된 구제급여가 있는 경우
 - ② 제1항의 부당이득 징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29조(구상권) 환경부장관은 제3자의 행위로 구제급여사유가 생겨 피

- 해자 또는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의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권리를 얻는다.
- 제30조(수급권의 보호)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제31조(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면제) 이 법에 따른 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제32조(생활화학용품질병피해 구제기금)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생활화학용품질병피해 구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정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 2. 제38조에 따른 생활화학용품피해구제부담금
 - 3. 제28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금
 - 4.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금품, 그 밖의 재산
 - 5. 기금운용 수익금
 - 6. 적립금
 - 7.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 8. 차입금
 - 9. 그 밖의 수익금

- ③ 정부는 구제급여 지급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 제3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 1. 구제급여의 지급
 - 2.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 3. 제47조에 따라 위임 및 위탁을 받은 자에 대한 보조금 및 출연금
 - 4. 생활화학용품질병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 5.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 제3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환경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계획을 세워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 운용하여 야 한다.
 -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 2. 재정자금에의 예탁
 - 3.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 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 5. 그 밖에 기금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할 때에는 그 수 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환경부장관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기금을 회계처리 하여야한다.
- 제35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기면 이를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면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 제36조(차입금) ① 기금에 속하는 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 ② 기금에서 지급할 현금이 부족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그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 제37조(기금의 출납 등) 기금을 관리·운용할 때의 출납 절차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8조(생활화학용품피해구제부담금)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조물 책임법」 제2조제3 호의 제조업자 중 생활화학용품의 제조업자등에게 생활화학용품피 해구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하여 기금에 납 입하여야 한다.
- 제39조(부담금의 산정 및 납부 등) ① 제38조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1. 제32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액
 - 2. 예상되는 구제급여의 지급액

- 3. 전년도까지 적립된 부담금의 총액
- 4. 그 밖에 생활화학용품질병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비용
- ② 환경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한 날로부터 15일로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부담금의 산정방법,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제40조(이의신청) ① 제38조에 따라 부담금을 부담하는 자가 부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 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38조에 따라 부담금을 부담하는 자가 부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제41조(심사청구의 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나 인정 등(이하 "결정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불복하는 사람은 환경부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1. 제10조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 2. 제12조에 따른 생활화학용품피해인정
 - 3. 제24조에 따른 특별유족인정
 - 4. 제28조에 따른 징수금
 -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는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사유로 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심사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의 절차·방법·결정 및 결정의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2조(생활화학용품질병피해구제 심사위원회) ① 제41조에 따른 심사 청구를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 소속으로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 되는 생활화학용품질병피해구제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2. 변호사로서 10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3. 영상의학, 호흡기내과, 예방의학, 병리학 등 생활화학용품질병 관련 분야 전문 과목 전문의로서 10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4. 손해사정사 등 보험 업무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③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심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회의의 공개 및 방청에 관하여는 제15조 부터 제1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판정위원회"는 "심사위원회" 로 본다
- ⑤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3조(심사청구에 관한 심리·결정) ① 환경부장관은 제41조에 따라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

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은 심사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 1. 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지정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거나 의 견을 진술하게 하는 것
- 2. 청구인 또는 관계인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하는 것
- 3.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제3자로 하여금 감정 또는 진단을 하게 하는 것
- 제44조(재심사청구의 제기) ① 제43조제1항에 따른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45조에 따른 생활화학용품질병피해구제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재심사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45조(생활화학용품질병피해구제 재심사위원회) ① 제44조에 따른 재심사청구를 심리·재결하기 위하여 환경부 소속으로 생활화학용품질병피해구제 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재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재심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2. 변호사로서 10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3. 영상의학, 호흡기내과, 예방의학, 병리학 등 생활화학용품질병 관련 분야 전문과목 전문의로서 10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4. 손해사정사 등 보험 업무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④ 재심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회의의 공개 및 방청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판정위원회"는 "재심사위원회"로 본다.

- ⑤ 그 밖에 재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6조(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재결)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재결에 관하여는 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재심사위원회"로, "제41조에 따라 심사청구를 받은 날"은 "제44조에 따라 재심사청구를 받은 날"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는 "재심사청구"로, "결정"은 "재결"로 본다.

제3장 보칙

- 제47조(위임 및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48조(보고 등) ①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등(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게 대하여 구제급여를 받은 사람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그 진료에 관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기관등의 직원이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 및 물건을 조사하게 할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④ 수급권자 및 수급권이 있었던 사람은 수급권의 변동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 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망 사실을 환경부 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49조(진찰요구 등)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결정 등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화학용품피해인정 및 구제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이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 의 의료기관에서 진찰 및 검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1.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전문요양기관
 - 2. 「환경보건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환경보건센터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 제50조(비밀유지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종사하는 사람 및 그 직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환경부 소속 공무원
- 2. 판정위원회의 위원
- 3.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위원회의 위원
- 제51조(조사 및 지원 등)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화학용품질병의 발생 또는 그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을 생활화학용품질병피해신고센터로 지정하고, 생활화학용품질병 조사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1.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전문요양기관
 - 2. 「환경보건법」 제26조에 따른 환경보건센터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 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제3항에 따른 생활화학용품질병피해신고센터의 지정 방법·절차, 지원조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52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계 기관·단체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 대하여 관련 자료나 의견의 제출, 회의 출석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 및 기관은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 제53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피해자와 유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 생활상담 등 필요한 지 원을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판정위원회,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4장 벌칙

- 제5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를 받은 자
 - 2. 제8조제6항을 위반하여 제공받거나 열람한 정보를 해당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자

- 3. 제50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 제56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생활화학용품피해의료수첩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자
 - 2. 제4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3. 제48조제1항에 따른 서류나 물건의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4. 제48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